

「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」 일부개정내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 재 국



2024년 8월 19일

군포도시공사 내규 제 95 호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공고기간, 외부 평가위원 구성 등 채용 관련 절차”를 “사전협의 기한 및 내용(방식), 공고기간, 시험단계, 외부전문가 비율 조정 등 채용절차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명확한”을 “2년 이하로 명확한”으로, “경우”를 “경우(단, 「기간제 및 단시 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에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2년 초과 가능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한다”를 “하며 외부 전문위원 구성 시 인사혁신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49조의 별표7 제3호가목과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 7] 징계양정기준(제49조 관련)

징 계 사 유	징 계 기 준						비 고
	견책 ~ 감봉	감봉 ~ 정직	정직 ~ 강등	강등 ~ 해임	해임 ~ 파면	파면	
3. 품위유지의무 위반							
가. 음주운전	「지방공무원 징계규칙」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따름						

징 계 사 유	징 계 기 준						비 고
	견책 ~ 감봉	감봉 ~ 정직	정직 ~ 강등	강등 ~ 해임	해임 ~ 파면	파면	
3. 품위유지의무 위반							
다. 무면허 운전							무면허 음주운전 인 경우 가중하여 징계
1) 면허 미 취득,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의 운전		○					

부 칙

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기 획 실
입 안	직 위 성 명	경 영 기 획 실 장 이 현 동
	직 위 성 명	인 사 총 무 팀 장 신 재 두
자	담당자 성명 (전 화)	문 원 미 (3 9 0 - 7 6 4 1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의1(비정규직 채용절차 간소화 및 긴급채용) ① 비정규직 채용 시 다음 각호의 경우 시와 협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<u>공고기간, 외부 평가위원 구성 등 채용 관련 절차를 간소화</u>할 수 있다.</p> <p>1. 연중 9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의 완료기간이 <u>명확한 일시·간헐적 업무인 경우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② <u>채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시험 공고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u></p> <p>1. <u>3개월 미만 : 3일 이상</u></p> <p>2. <u>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: 5일 이상</u></p> <p>3. <u>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: 7일 이상</u>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3조의1(비정규직 채용절차 간소화 및 긴급채용) ① ----- ----- -----</p> <p><u>사전협의 기한 및 내용(방식), 공고기간, 시험단계, 외부전문가 비율 조정 등 채용절차</u>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<u>2년 이하로 명확한 ----- 경우(단,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에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2년 초과 가능)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② (현행 제3항과 같음)</p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시험위원의 임명) ① 직원 의 채용시험에 관한 출제, 채점 등의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험위원은 과목당 2인 이상으 로 하고, 면접시험과 서류전형 위원도 2인 이상 하되, 외부 전 문위원(퇴직자나 비상임 이사 등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제외)을 1/2 이상 참여시 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<u>한다</u>.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1. ~ 4. (생 략)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② ~ ⑧ (생 략)</p>	<p>제7조(시험위원의 임명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하며 외부 전문위</u> <u>원 구성 시 인사혁신처 국가인</u> <u>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</u> <u>다.</u>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② ~ ⑧ (현행과 같음)</p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				
[별표 7] 징계양정기준(제49조 관련)							
징 계 사 유	징 계 기 준						비 고
	견책 ~ 감봉	감봉 ~ 정직	정직 ~ 강등	강등 ~ 해임	해임 ~ 파면	파면	
3. 품위유지의무 위반							
가. 음주운전							
1)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	○						신분을 속인 경우에 는 가중하 여 징계
2) 음주운전 2회		○					
3) 음주운전 3회					○		
4)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			○				
5)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거부		○					
6) 음주운전 교통사고 (음주정도에 따라 가감)		○	○				
7)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(음주정도에 따라 가감)					○		
8) 최근 1년 이내 운전직 운행전 음주 측정 결과 0.03%이상 4회	○						
9) 최근 1년 이내 운전직 운행전 음주 측정 결과 0.03%이상 5회		○					
10) 최근 1년 이내 운전직 운행전 음주 측정 결과 0.03%이상 6회			○				
11) 운전직의 음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1회			○				
12) 운전직의 음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2회					○		
개 정 안							
[별표 7] 징계양정기준(제49조 관련)							
징 계 사 유	징 계 기 준						비 고
	견책 ~ 감봉	감봉 ~ 정직	정직 ~ 강등	강등 ~ 해임	해임 ~ 파면	파면	
3. 품위유지의무 위반							
가. 음주운전	「지방공무원 징계규칙」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따름					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				
[별표 7] 징계양정기준(제49조 관련)							
징 계 사 유	징 계 기 준						비 고
	견책 ~ 감봉	감봉 ~ 정직	정직 ~ 강등	강등 ~ 해임	해임 ~ 파면	파면	
3. 품위유지의무 위반							
다. 무면허 운전							
1)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			○				무면허 음주운전인 경우 가중하여 징계
2) 면허 미 취득,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의 운전		○					
개 정 안							
[별표 7] 징계양정기준(제49조 관련)							
징 계 사 유	징 계 기 준						비 고
	견책 ~ 감봉	감봉 ~ 정직	정직 ~ 강등	강등 ~ 해임	해임 ~ 파면	파면	
3. 품위유지의무 위반							
다. 무면허 운전							
1) 면허 미 취득,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의 운전		○					무면허 음주운전인 경우 가중하여 징계